[회의록]제205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86차

1. 회의일시: 2025년 7월 17일(목) 오후 6시 30분

2. 회의장소: 무위당사람들 교육장(중앙로 83, 4층)

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천혜란, 이윤승, 염은경, 김선기, 김태성, 서연남 (이상 이사, 총 9명)
참관 : 공영훈
불참 : 이창호, 최효심, 정연우(3명)
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5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.
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5월 27일(화) 제204차 임시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.

7. 논의안건

제1호 의안 : 2025년 4월 ~ 2025년 6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**제58조(사업의 이용)**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6차 개정)

1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2.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(7차 개정)
5.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(7차 개정)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7차 개정)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.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**25년 4월 신규 조합원(5명, 4명(가구원))** : 서지애, 김소중(금대호), 서영희(서철우, 안애선), 이갑순, 원광일(김효은)

- **25년 5월 신규 조합원(7명, 5명(가구원))** : 이덕순(황창식), 유진영(박창호, 박민성), 윤장용(이귀성), 김하자, 최정자(박성우), 박정원, 한은미

- **25년 6월 신규 조합원(15명, 9명(가구원))** : 김미향, 홍경애, 이영희, 최다니엘(심영희), 김한영, 김영우, 강종필(장재연), 권태분, 안소영(최종복, 원항재, 원종현), 권순남(이선일), 최방행, 이복순, 김은진(김지운, 김영은, 김동필), 안상애, 민교영

- **총 가구원 18명(12세대)** ***총조합원수 1,737명(25년 6월 말 기준)**
-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조합원 활동 공간(가칭 : 조합원활동공간 “마중”) 및 사무공간 임대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
- 그간 원주밝음신협에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4층 인테리어 후원, 공간 무상 임대(관리비만 납부)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해주었고, 조합의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5층 대강당, 식당, 지하 1층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배려해줌.

- 그러나 1년 여를 넘어가면서 조합원 활동 프로그램 및 업무 회의 증가, 외부기관 방문 등 잦은 공간 대관 요청에 따른 상호 피로도 증가와 은행 특성 상 오후 6시 이후 이용 어려움 등 신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상황 속 에서도 내·외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함.

- 또한, 현 4층의 공간 외에는 신협의 전체 업무공간으로 조합이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며,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원 활동 공간을 통한 조합원과의 스킨쉽 강화 필요성,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시 공간 확대 필요성, 업무 회의 및 외부기관 응대 등 공간 필요성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해나가는 방향성에 있어 조합원 중심의 사업 확장성, 조합의 활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간이 필수적인 상황임.

- (예)공간 활용 방안

(현재)4층 : 사무국 이전에 따른 가정간호센터물품 비치, 사무, 휴게공간 등 을 고려한 공간 활용

(임대)3층 : 사무국 인력 증원 시 사무공간 확보(노인일자리사업 또는 프로젝트 사업 등), 상시 개방을 통한 조합원과의 스킨쉽 강화(신규 조합원 환영회, 조합원 소모임, 위원회 회의, 직원 회의, 외부기관 미팅 등)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중앙로 80(제일약국 옆 미용실 건물) 3층(테라스 있음)
- 3층 평수 43평(143.68m²) *별첨1,2)건축물대장, 평면도
- 임대 조건 : (2년 계약)보증금 3,000만원 월 임대료 88만원(부가세 포함) *(당초)110만원
 ※임대 종료시 공간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됨.(임대계약서에 삽입키로 함)
 ※관리비는 엘리베이터 사용료(현 5~6만원 내외, 3개 층이 나눠서 내면 됨, 2~3만원 예상)
 ※전기세, 수도세는 개별 납부.
- 구성공간(예정) : 사무국(사무실), 소회의실 1, 중회의실 1 *별첨3)(수정)평면도
- 인테리어 비용 : 9,075,000원 ~ 10,835,000원 내외 예상 *별첨4)견적서
- 집기류 내역 : 서랍장, 회의용 테이블, 의자, 프린터(임대), 전화기, 냉장고, 정수기 등
- (예정)인테리어 공사기간 2주 + 사무 집기류 구입 및 이전 1주
- 완료 되는대로 이전하여 업무 시작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부동산 등기 확인(근저당 부분)하여 금전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으면 한다.(확인완료.)
임대료를 2,000만원 으로 낮출 수 있는지 협의하였으면 한다.(조정 완료)
회의실 구성에 있어 활용성이 높도록 고려했으면 한다.
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초과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집기류 등 잘 고려하여 과지출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한다.

□제3호 의안 : 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(안) 승인 및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- 제203차 이사회 제3호 의안 “조합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추진의 건” 상정

-> 결정 사항 : 조합활성화위원회의 역할과 설치에 대해서만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차기 이사회때 조합원, 대의원 등 공개모집 형태의 위원회 참여구성(안)을 만들어서

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다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7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.(9차 개정)
1.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가.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사회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
나.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
다.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
라.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
마.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
바.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
사.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
아. 자원봉사활동(문구 추가, 4차 개정)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
가. (신설)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9차 개정)
나. (신설) 1.(가~아)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(9차 개정)

위원회 설치・운영규정

제1조【목적】
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제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적용범위】
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【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】
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

다.
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【위원회의 위원】
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5조【위원회의 직무】
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6조【실비지급】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【시행일】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[제1차 제정] 2015년 4월 17일

3. 제안 내용
- 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(안) 승인 및 추진
 *별첨5) : 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(안)

-> 결정 사항 : 모집 공고(안)을 수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모집 공고에 육하 원칙에 맞는 내용(목적) 작성과 구체적인 활동(교육, 홍보 등) 정기모임 횟수 등 을 보완했으면 한다.

□제4호 의안 : 조합원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조합원 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 활동 참여와 조합사업소 이용을 높이고자 조합원 포인트 제도 운영 규정을 신설코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3.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
3. 제안 내용
- 조합원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승인.
 별첨6) 조합원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(안)

-> 결정 사항 :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재상정키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포인트제도는 신규 조합원보다 기존 조합원의 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.
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실행했으면 한다.

□제5호 의안 : 조합원 2,000명 달성을 위한 조합원 가입 이벤트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- 25년 6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1,737명 임.
- 연 100명 내외의 신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탈퇴 조합원의 수를 감안해보면 현재의 조합원 가입 속도로는 27년 또는 28년에 2,000명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.
- 협동조합의 특성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활동성은 조합원의 이용과 참여, 활동에서 나오는데, 23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기간 이어져온 경영 불안정성과 조합원과의 스킨쉽 부족(프로그램, 활동 등)으로 조합원의 활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임.
- 또한, 오래된 조합원들이 많으나 조합에 대한 관심, 호응도 부족과 이용, 참여 활동 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의 활동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조합원의 배가가 필요함.
- 이에 신규 조합원의 이용과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“25년 내 조합원 2,000명 달성 이벤트”를 통해 조합 홍보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, 자본 조성 등 으로 지속가능성과 활동성을 꾀하고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내용
- 조합원 2,000명 달성을 위한 조합원 가입 이벤트 추진 승인
 별첨7) 강원의료복지사협 조합원 가입 이벤트(안)

-> 결정 사항 : 포인트 이벤트 대신 다른 이벤트 내용으로 수정하여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포인트 규정(안)을 재논의키로 한 부분을 감안하여 포인트 이벤트 적용은 안하는게 맞는 것 같다.
조합원, 대의원, 임직원이 2,000명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하다.
(ex. 개인별 달성 그래프 활용)

□제6호 의안 : 미지급 연차수당(2007년 ~ 2024년) 정산 및 지급의 건

1. 제안 배경
- 그간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, 퇴직시 남은 연차 일수 만큼을 계산하여 퇴사일을 조정하여 지급 정리해옴.
- 가장 오랜된 입사자는 신옥경(2007년, 18년 근무)이며 24년 말 기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직원은 19명으로 조합의 잠재적인 장기 부채가 될 수 있어 24년 말 기준으로 정리코자 함.
- 이후 2025년을 시작으로 전직원 자기 연차 50% 이상 소진을 공지하고 적극 실시토록 할 계획임.
- 소진 후 남은 연차일수 만큼 매해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며, 퇴직 시 에는 근로기준법 기준(입사일 기준)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, 회계연도 기준 일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만큼의 미사용수당을 더 지급하거나 공제하여 처리할 계획임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미지급 연차수당 정산 및 지급 승인 별첨8) 개인별 연차수당 내역

-> 결정 사항 :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7호 의안 : 이사회 불참사유서(이창호 이사) 동의의 건

1. 제안 배경
- 제200차 이사회 "제4호 의안 :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" 승인 함.
 ② 연속 3회 이상 불참시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사임한 것으로 한다.
 ③ 해임의 경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
- 제201차 ~제203차 이사회 연속 3회 불참한 이사 : 이창호
- 불참사유서 제출함(4월 30일) 별첨9) 이사회 불참 사유서_이창호 이사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 이사회 불참 사유서(이창호 이사) 동의

-> 결정 사항 : 불참사유서를 동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9월 이사회도 불참시 사임서를 받는 것으로 하다.

□**제8호 의안 : 노인공동생활추진위원회 규정(안) 승인의 건**

1. 제안 배경
- 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코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3.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
3. 제안 내용
- 노인공동생활추진위원회 규정(안) 승인.

노인공동생활추진위원회 규정(안)
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(이하 "조합")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기능)
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① 조합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 방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자문
② 설립 TF의 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
③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한 제언
④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기반 마련
⑤ 조합 내 관련 부서 및 조합원과의 연계 및 소통
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
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이사, 조합원, 관련 분야 전문가,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.
② 추진위원회의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
③ 위원은 조합 이사회의 추천 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이사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 (임원 구성 및 역할)
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, 회의를 주재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간사는 추진위원회의 행정 업무 및 회의록 작성, 사업 기록, 일정 조율 등을 담당한다.

제5조 (운영)
① 추진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.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6조 (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의 임기도 위원과 동일하다.

제7조 (비밀 유지 및 윤리)
위원은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조합의 목적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8조 (기타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-> 결정 사항 : 수정하여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익일 열릴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된 규정(안)을 올리도록 하다.

□제9호 기타 논의 안건

기타 논의 안건 :

1. 제안 배경
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
3. 제안 내용
-

-> 결정 사항 :

- 추가 의견 -

서 명

의장 이광희 **이사 박준영**

이사 염은경 **이사 신승훈**

이사 이윤승 **이사 천혜란**

이사 서연남 **이사 김선기**

이사 김태성